

25. 원도심지역 새로운 특별건축 컨셉 도입(유럽풍 마을 컨셉 등)

▶ 신규여부 **신규** 계속 ▶ 사업시기 **임기내** 임기후 ▶ 예산투자 **예산** 비예산 ▶ 사업주체 **인천시** 국가 민간

○ 정책목표

- 동구 수변, 고지대, 자유공원 등 일원을 유럽풍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
-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유도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

○ 정책개요

- 근거법령 : 「건축법」 제69조~제77조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05조~제109조
- 지정권자 : 인천광역시장
- 신청자 : 사업부서 또는 군·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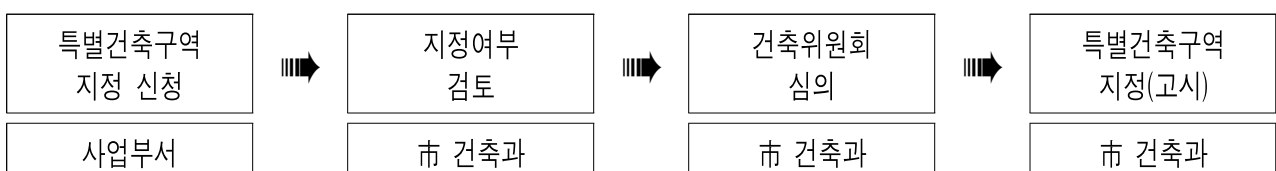
○ 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

-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
-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구역
-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(懸賞設計)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
-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,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등

○ 향후 추진계획

-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의뢰
- 구역 범위 및 개별법령에 따른 추진기관(부서) 결정 협의
- 타당성 및 구상 용역 추진(사업부서)
-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용역 추진(사업부서)
-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진행 및 지정

※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



● 추진 일정

세부 추진상황	2022년		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			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
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수행					■															
추진기관(부서) 결정 협의					■															
타당성 및 구상 용역 추진(사업부서)									■											
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용역 추진(사업부서)													■							
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진행 및 지정																	■			

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단위	건/목표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특별건축구역 지정	구역	1				1	

● 재정투자 : 비예산

○ 미래의 모습(기대효과)

정책사업명	지표	변화된 인천		
		2022년	인cheon	2026년
동구, 자유공원 일원 특별건축구역 지정	지정건수	-	→	1개구역